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113명”을 “1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50”을 “1,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08”을 “1,6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40”을 “1,532”로, 전문경력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09”를 “1,301”로 하고, 일반직 계 “1,298”을 “1,2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54”를 “1,246”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

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13명</u> 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u>114명</u> ----- ----- ----- ----- ----- ----- -----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u>		③ ----- ----- <u>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u> ----- ----- ----- ----- ----- -----		

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5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제65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6
년 2월 28일-----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0</u>	<u>1,643</u>	-7
•	•	•	
•	•	•	
일반직 계	<u>1,608</u>	<u>1,601</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u>1,540</u>	<u>1,532</u>	-8
•	•	•	
전문경력관	<u>19</u>	<u>20</u>	+1
•	•	•	
•	•	•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09</u>	<u>1,301</u>	-8
•	•	•	
•	•	•	
일반직 계	<u>1,298</u>	<u>1,290</u>	-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54</u>	<u>1,246</u>	-8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